pwc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 및 외국인 개인 배당금 관련 최신 조세 정책

2026.09

Issue 11

개요

2026 년 8 월 28 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상장회사 유통제한주 양도 개인소득세 정책 규범화에 관한 공고》[1]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2026]26 호, 이하 "26 호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하여,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 관련 소득세 정책 및 징수관리 요구를 보완하고 시장 규칙을 통일했습니다. 공고는 당일부터 시행됩니다.

9 월 1 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외국인 개인 배당소득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2] (재정부·세무총국 공고[2026]27 호, 이하 "27 호 공고")를 발표하여,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정책은 더이상 시행되지 않으며, 관련 소득은 "이자, 배당, 분배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고는 당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Newsflash 는 26 호 공고와 27 호 공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며 PwC 의 관찰을 공유합니다.

상세 내용

一、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세 정책의 변화 및 관찰

2010 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3] (재세[2009]167 호, 이하 "167 호 문건") 시행으로, 개인의 상장회사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규칙이 기본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즉,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은 재산 양도소득으로서 20% 세율이 적용되고, 공개 발행 및 유통 시장에서 취득한 상장회사 주식(이하 "유통주") 양도는 잠정 면세됩니다. 이후 《국가세무총국의 유통제한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4] (국세발[2010]8 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5] (재세[2010]70 호, 이하 "70 호 문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증권기관 기술·제도 준비 완료 후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6] (재세[2011]108 호, 이하 "108 호 문건"),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서비스 사항 추가 보완에 관한 공고》[7]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2024]14 호) 등이 잇따라 발표되어 세수 정책을 세분화하고, 증권기관의 기술·제도 발전에 맞춰 징수관리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양도 개인소득세 정책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자본시장이 성숙해지고 개인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26 호 공고는 이러한 정책 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조세 측면에서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를 더욱 규범화하였습니다.

1. 유통제한주 과세 범위 조정, 유통제한주 및 그로부터 파생된 무상배정주식(送转股)은 모두 과세 대상 유통제한주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기존의 정책 체계하에 상장회사 과세 대상 유통제한주는 유통제한주 및 그 상장 첫날(또는 주식분할 개혁 완료 후 주식 거래재개일)부터 해제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 파생된 무상배정주식을 포함하며, 유통제한주 해제 후 파생된 무상배정주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후자를 양도할 때 통상적으로 유통주 양도의 면세 정책을 적용합니다. 이와 더불어, 70 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유통제한주 해제 전 증여, 전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은 비율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26 호 공고는 유통제한주의 과세 범위를 조정하여, 해제일 이후에 파생하고 공고 시행 이후 주식 등기가 이루어진 무상배정주식을 과세 대상 유통제한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산양도소득으로서 20%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고는 유통제한주의 증여, 전환, 감소 발생 시 취득가액 조정 규칙을 보완하여, 해제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기초의 완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가정 예시를 통해 신규 정책과 기존 정책하에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의 개인소득세 처리 변화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개인이 상장회사 신주 유통제한주 100 만 주를 보유하며, 취득가액은 주당 2 위안입니다. 유통제한주 해제된 지 15 개월 이후 상장회사는 법정이익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하여 10 주당 10 주를 전입했습니다. 전입 전 주식 시장 가격은 주당 40 위안이었는데, 전입 후 시장 가격은 주당 20 위안이 되었습니다. 개인은 즉시 전체 유통제한주를 매각했습니다(주식 양도의 기타 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기존 정책 적용		26 호 공고 정책 적용	
	기존의 유통제한주	전입 후 신규 유통제한주	기존의 유통제한주	전입 후 신규 유통제한주
유통제한주 수량(a)	100 만 주	100 만 주	100 만 주	100 만 주
주식 취득가액(b)	주당 2 위안	주당 0 위안(주 1)	주당 1 위안(주 2)	

매각: 유통제한주 수량(c)	100 만 주	100 만 주	100 만 주	100 만 주
시장가격(d)	주당 20 위안		주당 20 위안	
과세수입(e=c*d)	2000 만 위안	0(주 3)	2000 만 위안	2000 만 위안
취득가액(f=c*b)	200 만 위안	0	100 만 위안	100 만 위안
과세소득액(g=e-f)	1800 만 위안	0	1900 만 위안	1900 만 위안
과세액(h=g*20%)	360 만 위안	0	380 만 위안	380 만 위안
과세액 합계	360 만 위안		760 만 위안	

주 1: 70 호 문건에 따르면, 해제 이후 전입이 발생한 경우,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 26 호 공고에 따르면, 해제 이후 전입이 발생한 경우,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은 비율에 따라 조정하며, 조정 후 취득가액은 주당 1 위안, 즉 (100 만 주*2 위안) / (100 만 주+100 만 주)입니다.

주 3: 167 호 문건에 따르면, 해제 후 전입은 과세 대상 유통제한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 시 면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2. 유통제한주 취득가액 최초 신고 강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청산 제도 개선

167 호 문건은 납세인이 완전하고 진실한 유통제한주 취득가액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여 유통제한주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유통제한주 양도수입의 15%를 유통제한주 취득가액 및 합리적 세금·비용으로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기관의 기술 및 제도 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108 호 문건은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의 최초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2 년 3 월 1 일 이후 신규 상장회사는 증권등록결제회사에 주식 최초 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 유통제한주 주주가 제공한 유통제한주 취득가액 관련 상세 자료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이에 대해 발행한 검증보고서를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관련 취득가액 자료와 검증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08 호 문건은 증권등록결제회사가 규정에 따라 실제 양도수입의 15%로 유통제한주 양도원가를 추계하고,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취득한 유통제한주의 원가가 실제 양도수입의 15%보다 낮은 경우, 취득가액 최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양도 시 추계된 양도원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개인소득세를 적게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6 호 공고는 108 호 문건에서 규정한 유통제한주 취득가액 최초 신고 요건을 강조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규칙을 조정하였으며, 청산 신고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인이 유통제한주를 양도할 때, 공고 시행 이후 상장회사 주식 최초 등록을 처리하면서 규정에 따라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권기관은 더 이상 양도수입의 15%로 원가를 추계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수입 전액에 20%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공고 시행 이전에 이미 최초 등록을 처리하였으나 취득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기존 유통제한주의 경우, 공고는 과도기 조치를 제공하여 증권기관이 계속해서 양도수입의 15%로 원가를 추계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상술한 두 가지 경우는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처리 방식만 다를 뿐, 개인이 유통제한주를 양도할 때의 과세액은 모두 실제 양도수입과 실제 원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개인소득세가 부족한 경우, 개인은 양도한 다음 해 6 월 30 일 이전에 청산 신고를 처리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개인소득세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산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정책 통일, 다층적 자본시장 세제 규칙의 연계성 및 일관성 추진

167 호 문건, 70 호 문건, 108 호 문건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유통제한주 양도 조세 정책은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유통제한주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이후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이하 "신삼판(新三板)")과 북경증권거래소(이하 "북경거래소")의 설립·발전에 따라, 신삼판 등록기업 및 북경거래소 상장회사 주식의 개인소득세 정책과 징수관리 규정은 주로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관련 정책을 준용하고 있으나, 일정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개인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등록기업 주식 양도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8] (재세[2018]137 호, 이하 "137 호 문건")의 규정에 따르면, 신삼판 상장기업의 과세 대상 원시주(原始股)에는 개인이 신삼판 등록기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식 및 등록 전에 파생한 무상배정주식뿐만 아니라, 등록 후에 파생한 무상배정주식도 포함됩니다. 또한 137 호 문건은 개인이 신삼판 등록기업의 원시주를 양도할 때의 구체적인 징수관리 방법은 167 호 문건과 70 호 문건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경거래소 설립 이후,《재정부, 세무총국의 북경증권거래소 조세 정책 적용 문제에 관한 공고》[9] (재정부·세무총국 공고[2021]33 호)에 따라, 북경거래소 상장회사의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은 잠정적으로 신삼판의 관련 과세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번 26 호 공고는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과세 대상 유통제한주 범위와 징수관리 메커니즘을 조정·개선한 것을 바탕으로, 개인이 상해·심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의 유통제한주, 신삼판 등록기업 및 북경거래소 상장회사의 원시주를 양도할 때 일률적으로 26 호 공고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자본시장 섹터 간 개인소득세 세제 규칙이 더욱 연계성과 일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PwC 의 관찰:

26 호 공고는 상장회사 유통제한주의 과세 범위를 보완하여, 유통제한주와 그로부터 파생한 무상배정주식에 동일한 과세 규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조세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26 호 공고가 적용되는 유통제한주에는 167 호 문건 제 2 조에 규정된 "주식분할 개혁 유통제한주"와 "신주 유통제한주" 외에도, 70 호 공고 제 1 조에 규정된 개인이 기타 방식으로 취득한 유통제한주도 포함됩니다. 또한, 26 호 공고는 "지분등록일"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유통제한주가 해제된 후 파생하고 공고 시행 이후 지분등록을 처리한 무상배정주식을 정책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공고 시행 이전에 이미 지분등록을 완료한 무상배정주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26 호 공고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 유통제한주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원가로 유통제한주를 취득한 경우 가중평균법에 따라 주당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며, 유통제한주와 유통주를 동시에 보유한 개인이 상장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는 유통제한주 우선 원칙(즉, 유통제한주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26 호 공고 시행 이후, 개인이 유통제한주와 유통주를 동시에 보유하고, 유통제한주 해제 전후로 여러 차례 무상배정주식이 발생하며, 공고 시행일을 걸쳐 지분등록을 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처리가 비교적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26 호 공고는 원천 신고를 강화하고,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을 조정하며, 청산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이 상장회사 유통제한주를 양도할 때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인이 실제 양도수입과 실제 원가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하고,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합니다. 개인이 유통제한주를 양도할 때의 청산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 월 30 일로,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연간 정산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이는 납세인이 과세연도 내 각종 과세소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자료와 증빙을 수집·정리하며,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정산신고 및 청산을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합니다.

二、외국인 개인 배당금 개인소득세 정책의 변화 및 관찰

27 호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자, 배당, 분배소득"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며,《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여러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10](재세자[1994]20 호) 중 외국인 개인이 해당 소득을 취득하여 잠정적으로 면세를 적용하는 정책이 동시에 폐지됩니다. 공고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급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개인은 자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7 호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 법률 관점에서 개인이 경내 비상장회사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무 처리는 일관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국적 신분이나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경내 원천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PwC 의 관찰:

경내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 개인은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며, 조약의 "배당" 조항에 규정된 우대 세율에 따라 중국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이 각기 다른 체약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조항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납세인은 특정 조세조약의 조항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만 조약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납세인의 경우, "외국인" 개인이 반드시 중국 개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개인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개인이 중국과 조약 체약국 쌍방의 이중 세무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무상 거주자 신분 판정은 비교적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조세조약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국가세무총국의〈비거주자 납세인 조약 혜택 적용의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11] (국가세무총국 공고[2019]35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비거주자 납세인 조약 혜택 적용 정보 보고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거주지국 세무당국이 발급한 세무상 거주자 신분 증명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개인이 상장회사 유통제한주를 양도할 때의 개인소득세 정책과 외국인 개인이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소득 면세 정책은 모두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입된 정책입니다. 최근 발표된 26 호 공고와 27 호 공고는 한편으로는 사회경제 발전의 변화와 과거의 조세 실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조정·보완하여 조세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최적화와 개선을 반영하며, 자본성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컴플라이언스 요구도 더 높아졌습니다.

26 호 공고가 시행됨에 따라, 상장 예정 회사와 그 개인 주주는 유통제한주 원가 산정과 검증 업무를 사전에 적절히 준비해야 하며, 증권등록결제회사에 주식 최초 등록을 신청할 때 개인 주주의 유통제한주 취득가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여, 향후 지분 매각 시 양도수입 전액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발생하게 될 자금 압박을 방지해야 합니다. 기존 유통제한주를 보유한 개인 주주는 가능한 한 빨리 유통제한주의 원가를 정리하고 상세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청산 신고 요건을 중시해야 합니다. 특히 지분 매각이 발생하고 실제 양도원가가 최초 신고한 취득가액 또는 양도수입의 15%로 추계된 양도원가보다 낮은 경우, 양도한 다음 해 6 월 30 일 이전에 상장회사 소재지 관할 세무당국에 청산 신고를 처리하여 세무 컴플라이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은 외국인 개인 주주를 기업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관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 차원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은 외국인 개인 주주에게 정책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전달하고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안내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 주주가 스스로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 기업과 소통·협의하여 적시에 정보를 제출하고 자료를 수집·정리해야 하며, "자체 판단, 신고 후 적용, 추후 검사 대비를 위한 관련 자료 보관" 방식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주석

1.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양도 개인소득세 정책 규범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2026]26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2027/content.html

2. 《재정부, 세무총국의 외국인 개인 배당소득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2026]27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52107/content.html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에 관한 통지》(재세[2009]167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570/content.html

4. 《국가세무총국의 유통제한주 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업무에 관한 통지》 (국세발[2010]8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128/content.html

5.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재세[2010]7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604/content.html

6.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증권기관 기술·제도 준비 완료 후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통지》6 (재세[2011]108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3800/content.html

7.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상장회사 유통제한주 개인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서비스 사항 추가 보완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2024]14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237400/content.html

8. 《재정부, 세무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개인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 등록기업 주식 양도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8]137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370/content.html

9. 《재정부, 세무총국의 북경증권거래소 조세 정책 적용 문제에 관한 공고》(재정부·세무총국 공고[2021]33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074/content.html

10.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관련 여러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자[1994]20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2416/c5202580/content.html

11. 《국가세무총국의 〈비거주자 납세인 조약 혜택 적용의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2019]35 호)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CONTACT LIST

자세한 문의는 PwC China KBD (Korean Business Desk)에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PwC China KBD CONTACT LIST

대표 **김도현 Partner** (86) (21) 2323-3350, dh.kim@cn.pwc.com

북경 **(회계감사 & Tax) 윤석 Director** (86) (10) 6533-3219, dan.s.yoon@cn.pwc.com

(회계감사 & Tax) 유지영 Director (86) (10) 8553-1114, jiyoung.j.yu@cn.pwc.com

(회계감사 & Tax) 김원택 (86) (10) 6533-6416, won-taek.w.kim@cn.pwc.com

상해 **(회계감사 & Tax) 신영직 Partner** (86) (21) 2323-1080, jake.shin@cn.pwc.com

(회계감사 & Tax) 최영기 (86) (21) 2323-8174, younggi.y.choi@cn.pwc.com

(회계감사 & Tax) 윤태규 (86) (21) 2323-8164, julian.t.yoon@cn.pwc.com

(TP) 최영선 (86) (21) 2323-1331, chris.choi@cn.pwc.com

홍콩 **우종욱 Director** (852) 2289-1243, jongwook.woo@hk.pwc.com

참고로, 저희의 지난호 Newsflash(영문/중문/국문)는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wccn.com/en/services/tax/publications/taxlibrary-chinatax-kr.html

新知
中国税务/商务专业服务

文中所称的中国指中国内地，不包括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

本刊物中的信息仅供一般参考之用，而不可视为详尽的说明。相关法律的适用和影响可能因个案所涉的具体事实而有所不同。在有所举措前，请确保向您的普华永道客户服务团队或其他税务顾问获取针对您具体情况的专业意见。本刊物中的内容是根据当日有效的法律及可获得的资料于 2026 年 9 月 10 日编制而成的。

这份中国税务/商务新知由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编制。**普华永道中国税收政策服务**是由富经验的税务专家所组成的团队。团队致力搜集、研究并分析中国内地、香港地区和新加坡现有和演变中的税务及相关商务政策，目的是协助普华永道税务部专业人员提供更优质的服务，并通过与有关的税务和其它政策机关、学院、工商业界、专业团体、及对我们的专业知识感兴趣的人士分享交流，以保持我们在税务专业知识领域的领导地位。

如欲了解更多信息请联系：

马龙

电话: +86 (10) 6533 3103

long.ma@cn.pwc.com

有关最新商业问题的解决方案，欢迎浏览普华永道 / 罗兵咸永道之网页：http://www.pwccn.com 或 http://www.pwchk.com

© 2026 普华永道。版权所有，未经普华永道允许不得分发。普华永道系指普华永道网络中国成员机构，有时也指普华永道网络。详情请进入 www.pwc.com/structure。

每家成员机构各自独立，并不就其他成员机构的作为或不作为负责。